

「'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」 이의신청 접수 수정 공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'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8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이의신청 대상 · 방법

□ (이의신청 대상) '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

- ① (보상 대상 제외)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② (확인보상 부동의)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③ (방역조치 위반 정정)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·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·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④ (보상금 환수) 「소상공인법」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
- ⑤ (담당자 착오)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,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

* 휴대전화·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,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·군·구 방문 시,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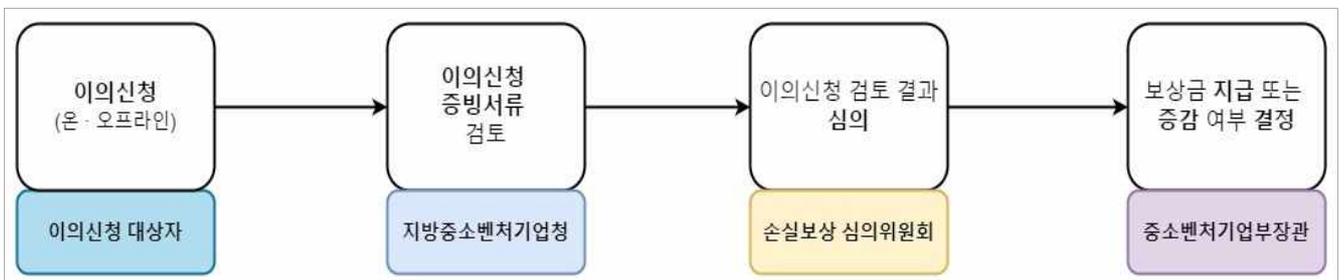
-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【붙임1】 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·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
-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,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

- **(이의신청 방법)**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접속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 - **(온라인)**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→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**【붙임2】** 첨부하여 신청
 - **(오프라인)** 관할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**【붙임3】**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·제출
- ※ **(주의)** ▲증빙서류 미제출, ▲증빙서류 보완 불응, ▲허위서류 제출* 등의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
 - *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·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- ※ **(주의)**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
 - 관할 시·군·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
 -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,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

- ◇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·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
- ◇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,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

2. 이의신청 절차 · 기간

- **(이의신청 절차)** 온·오프라인 신청 →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→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→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



- ① **(이의신청)**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접속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- ② **(검토)**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(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)
 - * 보상금액에 대한 전문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전문기관에 위탁
- ③ **(심의)**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(손실보상 심의위원회)
- ④ **(결정)**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
(이의신청 기간) '21.12.22.(수)부터 접수*

* ▲보상 대상 제외, ▲확인보상, ▲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
→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(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)

3. 유의사항

-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(【붙임2】참고)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
-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,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청 가능한 경우가 있음
 -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확인보상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체 반납하지 않음
-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확인요청을 거친 이후에만 이의신청 가능

4. 이의신청 문의

전화 문의

-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(☎1533-3300, 평일 09~18시 운영)
- 손실보상 전담창구(평일 09~18시 운영)
 - * 각 시·군·구청 / 지방중소벤처기업청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
온라인 문의

- 손실보상 홈페이지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접속 후 '채팅상담'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(손실보상114.kr) 직접 접속
 - * 상담원 : 평일 09~18시 상담 / 챗봇 : 24시간 상담 가능

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
보상금 지급 동의서

■ 손실보상 처리절차

- 1. 손실보상의 절차는 신속보상, 확인보상,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.
- 2. 신속보상은 국세청 과세정보 및 지자체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증빙 제출없이 손실보상금을 산정·지급받는 절차입니다. (「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IV.1.)
- 3. 확인보상은 신청인이 신속보상 절차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, 신속보상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·지급받는 절차입니다. (「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IV.2.)
- 4.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확인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, 감액·미지급·환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·지급받는 절차입니다. (「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VI.)
- 5. 신속보상 절차에서 산정된 보상금 지급에 동의 시 확인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상기의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

(서명 또는 인)

■ 보상금 지급 동의

신속보상 절차에서 산정된 보상금 금 (자 필 로 기 재)원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□ **(보상 대상 제외)**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○ 기업규모가 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)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,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*한 사업자

*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평균매출액등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7조)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경우

☞ ▲**이의신청서*(필수)**, ▲**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(필수)**

* **이의신청 사유**를 "손실보상 대상 제외"로 체크하고, **상세내용**에는 "소기업 초과" 또는 "소기업 판단 불가" 적시

- "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"는 다음과 같음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

<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 >

◇ 사업자등록증의 "개업연월일"이 '17.12.31. 이전인 개인사업자

☞ "과세기간"이 '18.1.1.부터 '20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*(근거 법령 : 「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」)

* 면세사업자의 경우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(이하 같음)

☞ "신고기간" 또는 "과세기간"이 다음과 같이 '18.1.1.부터 '20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(근거 법령 :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 시행규칙)

이의신청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
일반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"신고기간"이 '18.1.1.~'18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■ "신고기간"이 '18.7.1.~'18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■ "신고기간"이 '19.1.1.~'19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■ "신고기간"이 '19.7.1.~'19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■ "신고기간"이 '20.1.1.~'20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■ "신고기간"이 '20.7.1.~'20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
간이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"신고기간"이 '18.1.1.~'18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■ "신고기간"이 '19.1.1.~'19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■ "신고기간"이 '20.1.1.~'20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
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"과세기간"이 '18.1.1.~'18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■ "과세기간"이 '19.1.1.~'19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■ "과세기간"이 '20.1.1.~'20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

◇ 법인등기부의 “회사성립연월일”이 ‘17.12.31. 이전인 법인사업자
 ≡ “사업연도”가 ‘18.1.1.부터 ‘20.12.31.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 (근거 법령 : 「법인세법」 시행규칙)

◇ 사업자등록증의 “개업연월일”이 ‘18.1.1.부터 ‘18.12.31. 사이인
 개인사업자
 ≡ “과세기간”이 ‘19.1.1.부터 ‘20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 ≡ “신고기간” 또는 “과세기간”이 다음과 같이 ‘19.1.1.부터 ‘20.12.31.까지인
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(근거 법령 :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 시행규칙)

이의신청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
일반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“신고기간”이 ‘19.1.1.~’19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■ “신고기간”이 ‘19.7.1.~’19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■ “신고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■ “신고기간”이 ‘20.7.1.~’20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
간이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“신고기간”이 ‘19.1.1.~’19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■ “신고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
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“과세기간”이 ‘19.1.1.~’19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■ “과세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

◇ 법인등기부의 “회사성립연월일”이 ‘18.1.1.부터 ‘18.12.31. 사이인 법인사업자
 ≡ “사업연도”가 ‘19.1.1.부터 ‘20.12.31.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
◇ 사업자등록증의 “개업연월일”이 ‘19.1.1.부터 ‘19.12.31. 사이인 개인사업자
 ≡ “과세기간”이 ‘20.1.1.부터 ‘20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 ≡ “신고기간” 또는 “과세기간”이 다음과 같이 ‘20.1.1.부터 ‘20.12.31.까지인
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(근거 법령 :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 시행규칙)

이의신청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
일반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“신고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6.30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■ “신고기간”이 ‘20.7.1.~’20.12.31.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
간이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“신고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12.31.인 부가가치세 신고서
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“과세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12.31.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

◇ 법인등기부의 “회사성립연월일”이 ‘19.1.1.부터 ‘19.12.31. 사이인 법인사업자
 ≡ “사업연도”가 ‘20.1.1.부터 ‘20.12.31.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
◇ 법인등기부의 “회사성립연월일”이 ‘20.1.1.부터 ‘21.9.30. 사이인
 법인사업자 ☞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손익계산서

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상법」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손익계산서일 것
-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,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
- 이의신청자의 회사성립연월일(법인등기부 기준)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

이의신청자의 회사성립연월일	회계기간
‘20.1.1.~’20.9.30.	‘20.10.1.~’21.9.30.
‘20.10.1.~’21.8.31.	회사성립연월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‘21.9.30.
‘21.9.1.~’21.9.30.	회사성립연월일부터 ‘21.9.30.

○ 관할 시·군·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

☞ 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시설분류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) 【붙임4】

* 이의신청 사유를 “손실보상 대상 제외”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“방역조치 미이행” 적시

○ ‘19년 대비 ‘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사업자

☞ 이의신청서*(필수)

* 이의신청 사유를 “손실보상 대상 제외”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“매출액 증가” 적시

□ (확인보상 부동의)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○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☞ ▲이의신청서*(필수)

* 이의신청 사유를 “손실보상금 금액”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“매출액 정정” 적시

-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☞ **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**(필수)**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매출액 정정" 적시

**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

- 개업연월일에 따라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, 해당하는 기간의 자료를 제출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) 발급 시 과세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20.11.30.	'20.1.1.~'20.12.31.

-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산출 시 반영되는 소득, 필요 경비, 손금(損金)의 액수 또는 구성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☞ **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경정된 종합소득세·법인세 관련 신고자료(필수)**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영업이익률 등 정정" 적시

- "경정된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자료"는 다음과 같으며, 과세신고 및 기장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 다름(해당하는 유형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)

과세신고 유형	기장 유형	증빙서류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	근거 법령
기장신고	복식부기장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표준재무제표* ■ 필요경비의 구성 변경을 증빙 가능한 서류 	「소득세법」 시행규칙
	간편장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* 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* ■ 필요경비의 구성 변경을 증빙 가능한 서류 	
추계신고 (기준경비율)	기장하지 않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추계소득금액계산서(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)* ■ 필요경비의 구성 변경을 증빙 가능한 서류 	

* 종합소득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, 소득·필요경비의 액수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새로 작성한 자료(하기 요건 충족 필요)를 의미

< “소득 등의 액수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새로 작성한 자료”의 요건 >

◇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것

- 「소득세법」 시행규칙 제101조제12호에 따른 표준재무제표
- 「소득세법」 시행규칙 제102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
- 「소득세법」 시행규칙 제101조제11호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(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)

◇ 종합소득세 수정신고(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) 또는 경정청구(같은 법 제45조의2) 등을 목적으로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

◇ 이의신청자의 개업시점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회계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
'21.1.1.~'21.9.30.	해당사항 없음(사유 :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)

- “필요경비의 구성 변경을 증빙 가능한 서류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가능)

< “필요경비의 구성 변경을 증빙 가능한 서류”의 종류 >

◇ 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에 따라 지급연월*이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*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른쪽 상단의 “지급연월”을 의미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간(지급연월)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
'21.1.1.~'21.9.30.	해당사항 없음(사유 :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)

◇ 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음 기간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서

*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“임대차계약서”가 아니라면,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로 간주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포함되는 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
'21.1.1.~'21.9.30.	해당사항 없음(사유 :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)

◇ 상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지출내역으로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것
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·송금확인증 등(명칭은 은행마다 다름)
 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
 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
- *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(=매출세금계산서)와 임차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(=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) 모두 가능

- “경정된 법인세 관련 신고자료”는 다음 증빙서류를 의미

- 표준재무제표* (근거 법령 : 「법인세법」 시행규칙)
- 손금의 구성 변경을 증빙 가능한 서류**

* 법인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, 소득·손금의 액수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새로 작성한 자료(하기 요건 충족 필요)를 의미

< “소득·손금의 액수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새로 작성한 자료”의 요건 >

- ◇ 「법인세법」 제82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표준재무제표
- ◇ 법인세 수정신고(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) 또는 경정청구(같은 법 제45조의2) 등을 목적으로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
- ◇ 이의신청자의 개업시점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회계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
'21.1.1.~'21.9.30.	해당사항 없음(사유 :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)

** 해당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가능)

< “손금의 구성 변경을 증빙 가능한 서류”의 종류 >

- ◇ 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에 따라 지급연월*이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*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른쪽 상단의 “지급연월”을 의미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간(지급연월)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
'21.1.1.~'21.9.30.	해당사항 없음(사유 :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)

- ◇ 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음 기간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서

*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“임대차계약서”가 아니라면,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로 간주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포함되는 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
'21.1.1.~'21.9.30.	해당사항 없음(사유 :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)

◇ 상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지출내역으로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것
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·송금확인증 등(명칭은 은행마다 다름)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

*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(=매출세금계산서)와 임차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(=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) 모두 가능

※ (주의) 관할 세무서에 ▲수정신고, ▲경정청구 또는 ▲손금의 구성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로 표준재무제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,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(형법 제137조)·사기죄(형법 제347조)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
※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종합소득세·법인세 관련 신고자료의 귀속연도는 이의신청자 개업시점에 따라 다름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과세신고자료
~'18.12.31.	'19년 귀속 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자료
'19.1.1.~'20.12.31.	'20년 귀속 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자료
'21.1.1.~'21.9.30.	과세신고자료 없음('22년 예정)

-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개인사업자 또는 '21년 개업한 사업자*로서,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·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* ▲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'21.1.1.~'21.9.30. 사이인 개인사업자 또는 ▲법인 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'21.1.1.~'21.9.30.인 법인사업자를 의미

☞ **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인건비·임차료 증빙서류**(필수)**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영업이익률 등 정정" 적시

** ▲손익계산서와 ▲인건비·임차료 증빙서류는 **함께 제출** 필수

- "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"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증빙서류를 의미

< "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"의 요건 >

- 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상법」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것
- ◇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,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
- ◇ 이의신청자의 개업시점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회계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
'21.1.1.~'21.9.30.	개업한 날부터 '21.9.30.까지

- "인건비 증빙서류"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근거 법령 : 「소득세법」 시행규칙) 및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의미(모두 제출*)

**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를 **함께 제출** 필수

- 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, 손익계산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*에 해당하는 자료를 **모두 제출**

*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른쪽 상단의 지급연월 기준

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	손익계산서 회계기간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	'19년 1월부터 '19년 12월까지(총 12개월치)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	'20년 1월부터 '20년 12월까지(총 12개월치)
'21.1.1.~'21.9.30.	개업한 날부터 '21.9.30.까지	개업한 달부터 '21년 9월까지

◇ **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**의 경우, 손익계산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*에 해당하는 자료를 **모두 제출**

*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왼쪽 상단의 고지연월 기준

**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 의무가 없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

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	손익계산서 회계기간	4대사회보험 산출내역서 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	'19년 1월부터 '19년 12월까지(총 12개월차)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	'20년 1월부터 '20년 12월까지(총 12개월차)
'21.1.1.~'21.9.30.	개업한 날부터 '21.9.30.까지	개업한 달부터 '21년 9월까지

- “**임차료 증빙서류**”는 다음 증빙서류를 의미(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출내역 모두 제출)

◇ **손익계산서 회계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임대차계약서**

*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“임대차계약서”가 아니라면,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로 간주

◇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**임차료 지출내역(다음 중 택일)**
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·송금확인증 등(명칭은 은행마다 다름)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*

*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(=매출세금계산서)와 임차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(=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) 모두 가능

○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**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**

☞ ▲**이의신청서*(필수)**, ▲**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) 【붙임5】**, ▲**시설분류확인서**(해당자만 필수, 시·군·구 발급)**

* **이의신청 사유**를 “손실보상금 금액”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“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” 적시

** **보상 대상 기간**(’21.7.7~’21.9.30)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 지자체가 변경되었다면, **변경 전후** 지자체가 모두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도 제출해야 해당 사실 확인 가능

- “**시설분류확인서**”는 보상 대상 기간(’21.7.7.~’21.9.30.)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 지자체가 변경된 사업자만 해당

※ ▲**변경 전**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, ▲**변경 후**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

○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☞ 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시설분류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)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시설분류 정정" 적시

□ (방역조치 위반 정정)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·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써 보상금 감액·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☞ 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)

【붙임6】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감액·미지급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방역조치 위반 사실 정정" 적시

□ (보상금 환수) 「소상공인법」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

☞ 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이의신청 소명자료**(필수)

* (이의신청 사유) 손실보상금 환수

** 소명자료 검토 이후, 필요시 자료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요청 가능

□ (담당자 착오)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써,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

* 휴대전화·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,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·군·구 방문 시,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

①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·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

②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,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

※ (주의) 상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보상금 동의 철회서를 허위 발급받아 손실보상금 수급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(형법 제137조)·사기죄(형법 제347조)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
☞ **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보상금 동의 철회 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)**
【붙임7】, ▲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(필수)

* **이의신청 사유**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**상세내용**에는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지자체 담당자 착오로 잘못 동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 적시

- "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" 및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

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	증빙서류*
매출액 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필요시)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 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)
영업이익률, 인건비 · 임차료 비중 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정된 종합소득세 · 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 ■ 인건비 · 임차료 증빙서류
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■ (필요시) 기존 영업신고증 · 등록증 · 허가증
시설분류 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분류확인서
방역조치 위반 사실 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

*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에 따라, **이의신청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서류만 모두 제출**하면 됨

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2호서식]

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이의 신청인 (대표자)	[] 개인사업자	상호명	
		대표자 성명	사업자 등록번호
	[] 법인사업자	상호명	법인명
		대표자 성명	사업자 등록번호

이의신청(다음중 택일) : [] 손실보상 대상 제외, [] 손실보상금 금액, [] 손실보상금 감액·미지급,
[] 손실보상금 환수

상세내용

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(지역별 시설분류확인서 일련번호 기입(예 : 서울중로시설-00001))

시설분류확인서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	개업연월일	
대표자 성명		연락처 (휴대전화)	
업체명			
사업장 주소			
시설 유형	※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'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목록'에서 선택하여 기입		

2021.7.7.일부터 9.30.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분류를 확인하오니, 「소상공인 손실보상」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자치단체장 명의 직인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(지역별 방역조치 이행 시설확인서 일련번호 기입(예 : 서울종로이행-00001))

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개업연월일	
대표자 성명	연락처 (휴대전화)	
업체명		
사업장 주소		
시설 유형	※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'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목록'에서 선택하여 기입	
방역조치 기간	집합금지	영업제한
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
방역조치 이행기간	집합금지	영업제한
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

※ 방역조치 기간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해당되는 날짜를 모두 작성

2021.7.7.일부터 9.30.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하오니, 「소상공인 손실보상」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자치단체장 명의 직인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(지역별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일련번호 기입(예 : 서울종로정정-00001))

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개업연월일	
대표자 성명	연락처 (휴대전화)	
업체명		
사업장 주소		
시설 유형	※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'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목록'에서 선택하여 기입	
방역조치 기간	집합금지	영업제한
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
방역조치 위반일(기준)	집합금지	영업제한
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
방역조치 위반일(정정)	집합금지	영업제한
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	'21. . . ~ '21. . .(00일), '21. . . ~ '21. . .(00일), ⋮ (총 00일간)

※ 방역조치 위반기간과 위반일은 해당되는 날짜를 모두 작성

2021.7.7.일부터 9.30.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오니, 「소상공인 손실보상」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자치단체장 명의 직인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	업체명	
대표자 성명		연락처 (휴대전화)	
사업장 주소			
손실보상금 (신속보상) 신청 일자		손실보상금 (신속보상) 지급 일자	
지급된 보상금 총액	금 □억 □천□백□십□만 □천□백□십원 정		
신청·지급 철회 동의	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금이 신청·지급되었으므로 보상금 신청·지급 철회에 동의합니다. (신청자 성명, 서명 또는 인)		

위 신청인에 대해 지자체 신청·접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금이 신청·지급된 바,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 신청된 보상금 신청과 지급 건에 동의하지 않으며, 이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자치단체장 명의 직인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